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2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년 6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충북21세기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한 정책자문기구로 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개방화·정보화 추세에 부응한 정책개발,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병행하기 위하여 설치, 운영하고 있으나
-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,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임기연장 : 당초 1년 ⇒ 변경 2년
 - 위원의 임기연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
 - 위원회의 노하우 축적을 통한 도정의 활력화 도모
- 기타사항 : 현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'1년'을 '2년'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.